

-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-  
**2025년 「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」 모집 공고(2차)**

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인재를 발굴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2025년 「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, 청년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. 7. 14.

김 천 시 장

## 1 사업 개요

가. 사업명: 2025년 「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」

나. 신청기간: 2025 7. 14(월) ~ 7. 25(금) 09:00 ~ 18:00

다. 사업위치: 김천시 내 빈 점포

※ 사업예정 점포 소유주의 임대확약서(붙임 서식 참고)를 제출하여야 함.

※ 영업을 위해 다른 법령상의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경우, 그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 후 지원해야 함.

라. 사업규모: 청년창업자 총 6명(점포) 정도

마. 신청대상: 공고일 현재 김천시 거주·거주예정인 19세 ~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※ 대상기준 : 19세 이상 ~ 39세 이하

(1986. 1. 1. ~ 2006. 12. 31. 출생자)

※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김천시로 전입 해야하며, 전입하지 않을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됨.

바. 지원내용: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차료 지원 (최대 10백만원)

- 리모델링비 최대 5백만원 (500천원/3.3㎡)

- 임차료 최대 월 0.5백만원 (50천원/3.3㎡) X 최대 10개월

※ 최소 2년 영업(사업장, 업종, 명의이전 불가) 및 주민등록(관내) 유지 조건.

예) 사업자등록증발급일 2025.4.2. ⇒ 2027.4.1.까지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장으로 운영 및 주민등록 유지

### 신청 제외 대상

- ⊗ 취업 중인 자
- ⊗ 사업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
- ⊗ 국세·지방세 체납자
- ⊗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
- ⊗ **사업공고일 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**
- ⊗ 고등학생, 일반 대학(원)생 및 휴학생(단, 졸업예정자는 가능)
- ⊗ 동일(유사)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
- ⊗ 보조금 취지 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
- ⊗ 프랜차이즈 업체
- ⊗ 무인점포
- ⊗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(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)
- ⊗ 사업 영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(군 입대, 유학, 이민 등)가 있는 자
- ⊗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사. 신청분야: 청년창업

- 다양한 분야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템
- 김천시에서 추진중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업종 가점부여 (단, 제외 대상 업종은 불가)
-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기발한 창업아이템 등은 가점 부여(단 실현가능하고 유망한 아이템일 경우 해당)
- 김천 청년창업지원센터(청년 창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자) 가점부여

## 업종 제외 대상

- ⊗ 금융부동산 (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)
- ⊗ 유흥접객 (무도장, 단란·유흥업소 등)
- ⊗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 관련 업종, 숙박업
- ⊗ 사회통념상 유흥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종
- ⊗ 레저(골프장, 스키장, 갠블링, 배팅업)
- ⊗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배제

## 2 지원내용

### 가.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

구 분	지원기간	지 원 기 준	비 고
리모델링비	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~ 2025. 12.	1인(1개 점포) 당 최대 500만원 (500천원/3.3㎡)	
임 차 료	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~ 10개월	1인(1개 점포) 당 월 최대 50만원 (50천원/3.3㎡) X 최대 10개월 ※보조결정 이후부터 발생한 임차료에 대해서만 지원	

※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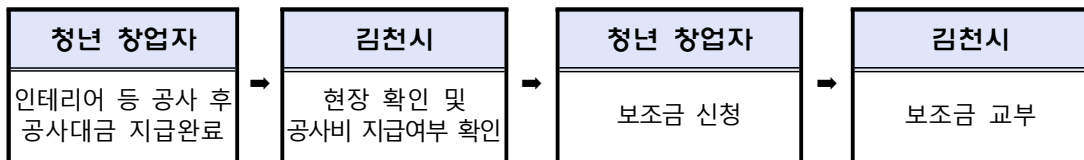
## 지원 불가 항목

- ⊗ 점포 임차 보증금
- ⊗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
- ⊗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·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
- ⊗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
- ⊗ 공과금,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
- ⊗ 일반 사무용품 등의 비용
- ⊗ 건물 및 토지매입 등 자산형성 비용
- ⊗ 자산 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
- ⊗ 직계존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임차료

나. 지원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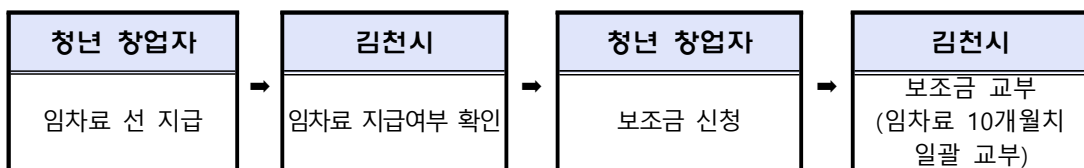
- 청년이 직접 창업공간 조성
- 관외거주자일 경우,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, 주민등록초본을 제출.  
 ※ 확정 통보 후 30일 이내 김천시로 미 전입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됨.
- **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, 시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** ※본인,직계존비속,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건물일 경우 임차료 지원대상 아님.
  - 사업대상자로 선정(통보)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
  - 임대차계약서 상 점포 임차기간은 영업유지기간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이후 2년을 포함하여야 함.
- 보조금 교부 결정이 확정된 후 보조금 지급 청구 시,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및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시에 제출
- 보조금은 이행보증증권 등 해당 제출서류를 모두 시에 제출한 자에 한해 아래와 같이 지급됨.

- 리모델링비



※ 보조결정 이후부터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지원

- 임차료



※ 보조결정 이후부터 발생한 임차료에 대해서만 지원

- 임차료의 경우 10개월치 일괄 교부 후 정산
- **사업자등록 및 개업은 2025년 내에 완료해야 함**
-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의무 이행
- 해당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사업포기 의사로 간주

다. 사후관리

- 창업(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) 이후, 최소 2년은 영업 및 주민등록(관내)을 유지하여야 함.
  - 창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, 세무신고의 대상이 되며, 4대 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.
  - 사업장 관리(정기/특별점검 등)에 적극 협조
- ※ 점검 시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주민등록초본, 임차료 이체내역

### 3 참여자 선발

가. 선발방법: 1차 서류심사, 2차 면접(발표)심사

나. 심사일정

- 1차 서류심사: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시 홈페이지 공고
    - 자격요건 적합 여부(연령, 업종 등) 확인
  - 2차 면접(발표)심사: 8월 중 예정
    -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(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 내외)
    - 최종 결과발표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
- ※ 심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다. 평가기준

항 목	세 부 항 목	배점	내 용
창업자역량 (30)	창업자의 역량	15	- 창업자의 사업수행 역량
	사업계획의 충실성	15	-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
아이템 (30)	아이템의 창의성	15	- 창업아이템의 창의성
	아이템의 현실성	15	- 창업아이템의 실현 가능성
사업성 (40)	시장 경쟁력	15	- 경쟁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
	사업의 수익성	15	- 매출의 안전성 / 마진율
	지속가능성	10	- 사업확산·파급력 등 향후 발전가능성
가점 (10)	김천시 원도심 활성화	3	- 김천시 추진중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 관련 업종
	지역발전 기여도	3	- 창업아이템의 지역연관성, 지역발전 기여가능성
	자격증 유무	2	- 창업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
	김천청년창업지원센터수료	2	- 청년 창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자

## 4 지원중지 및 환수조건

- 가.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불이행하거나,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, 부정 수급한 경우
- 나.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,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 (업종 및 명의이전 불가)
  - ※ 사업유지기간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이후 최소 2년은 영업 및 주민등록(관내) 유지
  - 예)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5.4.2. ⇒ 2027.4.1까지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장으로 운영해야 함
  - ※ 예외 : 천재지변 및 타의(사망 등)에 의한 강제적 폐업인 경우 (증빙 필요)
- 다. 사업 지원과 관련 이행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라.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청구한 경우
- 마. 기타 지원중지나 환수가 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

## 5 신청방법

- 가. 신청기간: 2025. 7. 14.(월) ~ 7. 25.(금) 09:00 ~ 18:00
- 나. 신청방법: 본인 직접 방문신청(우편·팩스·이메일·택배 신청 불가)
- 다. 접수처: 김천시 시청1길 1, 2층 일자리경제과(054-420-6703)
- 라. 제출서류
  - ①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각 1부.
  - ② 신분증 사본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 동의서, 서약서 각 1부.
  - ③ 주민등록초본(5년간 주소이동포함, 생년월일 공개) 1부.
  - ④ 가족관계증명서(임차료 신청자에 한함)
    - ㄱ. 미혼: 본인, 부모 기준 각 1부.
    - ㄴ. 기혼: 본인, 배우자, 부모, 배우자의 부모 기준 각 1부.
  - ⑤ 점포임대 계약서, 건축물대장 각 1부.
  - ⑥ 개인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.
  - ⑦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1부.

- ⑧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.
- 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.
- ⑩ 창업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. (해당자에 한함)

※ 공고문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.

※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기간('25. 7. 14. ~ '25. 7. 25.)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.

### ○ 서류 발급방법

서류명	발급 방법
주민등록초본	① 온라인 : 정부24( <a href="http://www.gov.kr">www.gov.kr</a> ). 공인인증서 필요 ② 오프라인: 읍·면·동 사무소 및 시청 민원실 * 5년간 주소이동 포함, 생년월일 공개.
가족관계증명서	① 온라인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 <a href="http://efamily.scourt.go.kr">http://efamily.scourt.go.kr</a> ) 공인인증서 필요 ② 오프라인 발급 : 읍·면·동 사무소 및 시청 민원실 * 발급대상자(본인과의 관계)를 부(父)기준 1부, 모(母) 기준 1부로 각각 발급, 생년월일 공개. * 배우자가 있을 시, 배우자 부(父)기준 1부, 모(母) 기준 1부 추가 발급
건축물대장	① 온라인 : 정부24( <a href="http://www.gov.kr">www.gov.kr</a> ) ② 오프라인: 읍·면·동 사무소 및 시청 민원실
개인신용평가 확인서	온라인: 개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(올크레딧, NICE 등) *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성명·신용등급·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원	① 온라인 발급 : 국세청홈택스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 로그인 후(공인인증서 필요) → 신청/제출 → 신청업무 → 사실증명신청 →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신청하기 → 발급(신청 후 3시간 소요) ② 오프라인 발급 : 관할 세무서 방문 * (유의사항)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
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① 온라인 (공인인증서 필요) 국세 완납증명서: 국세청 홈택스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 지방세 (완납)납세증명서: 정부24( <a href="http://www.gov.kr">www.gov.kr</a> ) ② 오프라인: 읍·면·동 사무소 및 시청 민원실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	① 온라인 : 고용산재토탈서비스 ( <a href="https://total.comwel.or.kr">https://total.comwel.or.kr</a> ) ② 오프라인: 전국 근로복지공단 (연락처 1588-0075)

## 6 유의사항

- 가. 신청인은 공고문 상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,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.
- 나. 신청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우, 사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지원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하며, 향후 동일한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.
- 다. 공고문 상의 내용은 김천시의 해석에 따르며,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
- 라.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향후 점수 및 심사평가표는 공개하지 않음.
- 마. 적격자가 없을 경우(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등),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- 바.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.
- 사.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.
- 아.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 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

## 7 문의처

○ 김천시 일자리경제과(일자리정책팀) ☎054-420-6703

- 붙임 1. 사업신청서(서식) 1부.  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 동의서(서식) 1부.  
3. 서약서(서식) 1부.  
4. 사업계획서(서식) 1부.  
5. 임대확약서(서식) 1부. 끝.